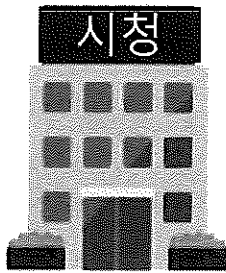


# 주거확보급부금 안내

휴업 등에 따른 수입 감소로 인해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원칙상 3개월, 최대 9개월분의 집세 상당액을 지자체에서 집주인에게 지급합니다.



집주인에게 직접 집세를 지불!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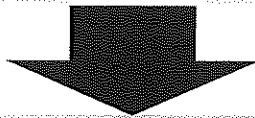
신청 대상자는

지금까지

실직 및 폐업 후 2년 이내인 분

2020년 4월 20일 이후

실직 및 폐업 후 2년 이내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분



4월 30일부터는 더욱 이용하기 쉽게

헬로 워크에 구직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

주거확보급부금 신청 관련 상담은  
가까운 자립상담 지원기관에 문의  
자립상담 지원기관 일람

<https://www.mhlw.go.jp/content/000614516.pdf>

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이용자는 여기로 →





## 자주 하는 질문

Q. 휴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?

A. 본인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인하여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이 감소한 경우 또는 취업 기회가 크게 감소하여 경제적으로 곤경에 처한 경우를 뜻하며, 아래의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.

- (예 1) 헬스장이 일부 휴업함에 따라 평소 주 4~5일간의 근무가 주 2~3일 이하로 변경된 헬스장의 트레이너
- (예 2) 해외에서 게스트를 초청하여 2주간 개최되는 이벤트에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활동 자제로 인해 이벤트가 중지된 프리랜서 통역가
- (예 3) 겸업으로 2개의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경기 악화로 인해 1개의 사업소가 휴업하면서 근무 일정이 없어진 자
- (예 4) 활동 자제로 인해 잇달아 숙박 예약이 취소된 여관업을 경영하는 자

또한, 위 내용은 예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에 유연한 대처를 부탁드립니다.



Q. 실직 및 폐업 후 2년 이내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해 수입이 감소하여 주거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?

A. 고용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류와 근무 일수 및 근무 시간의 감축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주가 제시한 근무 일정표 등이 있습니다.

개인사업자는 점포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도급 계약을 통해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문자의 발주 취소 및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.

사회복지협의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례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아울러 해당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Q. 현재 프리랜서로 생활 중이나, 일이 급감했습니다. 주거확보금부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?

A. 가능합니다. 프리랜서 및 자영업자이신 분께서는 본인의 의향 및 상황에 따라 현재의 근로 형태를 유지하면서 이와 더불어 가령, 아르바이트 등 단기 고용을 통해 당분간 생활비를 마련하는 등의 방법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현재 하고 계신 일을 그만두지 않으셔도 됩니다.